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6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1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축개발과장 정상호)

가. 개정이유

-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한 「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 - “2024년 12월 31일” (현행)→ “2029년 12월 31일” (개정)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365(2024.8.29.)호]

라. 기 타

- 1) 기획예산담당관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
· 원안가결[기획예산담당관-12834(2024.8.28.)호]
- 2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40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8.30. ~ 2024.9.19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5조)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, 공공실버주택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